# 참고 2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		기본공제	1명당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150만 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없음
적 공				* 장애인의 경	!우 나이요건 !	제한 없음			
제			CII / I HA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	JI	루녀자 양/기혼)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자	는 부녀자공	제와 중복적:	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b>국민연금</b> 또는 <b>공무원연금 등</b>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 ※ 주택마련저					<b>의 40%</b> 공제
<b>=</b>		‡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별 소	주 택			차입 시기			공제 한도		
득 공 제	자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15.1.1.이후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I타): 500만 원
			한도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500만 원)
				′11. 12. 31. 01	전 상환기간	15년 이상(1,	000만 원), 3	0년 이상(1,5	00만 원)
				′03. 12. 31. 0I	<b>전</b> 상환기간	10년 이상(60	0만 원), 15년	크 이상(1,000	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	<b>에</b> 지출한 <b>7</b>	디정기부금	<b>중</b> 공제 한	도 내 이월	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00. 12. 31. 이전 가입) <b>납</b>	<b>입액의 40%</b>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공제 한도) 근회	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ェ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로서 <b>총급여액 7천만 원</b> <b>:저축</b> 등에 납입한 금액(24	<b>이하</b> 인 근로자가 <b>주택청익</b> 10만 원 한도)의 40% 공제	
그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 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 공제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b>%, 40%)</b> 를 소득공제 三·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	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b>임금삭감액의 50%</b>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군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특 따라 벤처기업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상	
			사람, <b>등록 장애</b> <b>경력단절여성</b> (11	<b>인</b>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경	에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당애인의 경우 '14.1.1. 이후),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세 액	중소기업	연 150만 원		2018.1.1.~	90%	
감 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한도	청년	2016.1.1.~2017.12.31	70%	
_			COLLOLALTI	2014.1.1.~2015.12.31.	50% 7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4.1.1.~	50%	
				2015.12.31.	3070	

항목	구 분		그브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87	1 4		7 正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3,300만원이하(74만원)·7천만원이하(66만원)·그외(50만원) ※ 중소기업취업 강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자 녀		기본공제대상	전 액	<b>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b> 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 (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보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험 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b>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b> 로 하는 <b>장애인 전용</b>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 료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b>3%</b>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b>15%</b>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비	② 부양가족	연 105만원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Е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원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
	특별		초중고생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세 액	세액		대학생	1명당 135만원	대상 아님)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b>900만원</b>
공 제	공 제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30만 원 정치 이하 자금 10만 원	근로소득금액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기	지금   10년 편 	100%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부금	우리사주	73 4 6 701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 · · · · · · · · · · · · · · · · · · ·
		Ŧ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지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의 5%를 세액공제
			) 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	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 세 액		월 세 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 ※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콜센터 (1688-0700)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 '13. 1. 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년∼'18년 차입분 4억 원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2.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 당초 적용기한 2018. 12. 31.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연장)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거나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당초 적용기한 2018. 12. 31.
-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 내일채움공제: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 당초 적용기한 2018. 12.31.

#### 3.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19.2.12. 이후 면세점 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용카드	듲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모
<b>∕•</b> \	<u> </u>	0	$^{\prime\prime}$ 007	一一〇ペリノー	께쐬런		$\circ$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 2.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살펴보기

○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L	내 용
	총급여의	4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초과 1,500	)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		,
	4,500만원 초과 19	<sup>†원 이하</sup>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	<b>급여액</b> 2,5	500만원 이하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 500만원)이하	0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b>총급여액</b>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 경우 <b>총급여액</b> 5천단		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	<b>급여액</b> 7천	만원 이하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b>총급여액</b> 7천만원	이하만 해	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역	백의 20%와 3	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300만원(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8천	만원 이하만 해당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3,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음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 다만, 위 글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음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b>총급여액</b>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원 한도 공제율 : <b>총급여액</b>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b>총급여액</b> 5천 5백	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 2.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 두 사람 모두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공제항목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 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 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00. 12. 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공제항목	공제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 12. 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4.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리 포크스세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sup>※</sup>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 바람.